

## 정당화에 대한 권리: 서론 - 라이너 포르스트

번역자: 서요련

### 서지정보

Rainer Forst(2012), *The Right to Justification: elements of a constructivist theory of justice*, trans. Jeffrey Flyn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9.

원저: Rainer Forst(2007), *Das Recht auf Rechtfertigung: Elemente einer konstruktivistischen Theorie der Gerechtigkeit*,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 ※ 알려두기

1. 본문에서 이탤릭체로 강조한 표현은 ‘굵게’ 표시하였다.
2. 본문에서 ‘역주’를 표시하지 않은 각주는 모두 저자의 각주이다.

### 서론: 정의의 토대

1

철학은 인간을 수많은 방식으로 규정해왔다. 가령 이성이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이성적 동물** (animal rationale), 고유한 언어 능력이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로고스가 있는 동물**(zoon logon echon), 유한하고 제약에 갇힌 “결함 있는 존재”,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사회적 존재(animal sociale), 정치적 존재(zoon politikon)로 규정하기도 했다. 내 관점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결합하여 나오는 인간상은 바로 **정당화하는 존재**(justificatory beings)이다. 정당화하는 존재는 타인에게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믿음·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지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맥락에서는 이를 의무로 보고 타인도 똑같이 정당화하리라 기대한다. 인간의 실천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정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천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즉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위하건 간에, 자신과 타인 모두 명시적으로든 (적어도 처음에는) 암묵적으로든 이유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이 “정당화 질서”(order of justification)에 속하는 사회적 맥락을 “정치적”(political)이라 부른다. 정당화 질서는 협동과 갈등을 비롯한 인간의 공동 삶을 정당한 혹은 정당화 가능한 방식으로 규제하려는 규범·제도로 구성되는 질서를 말한다. 정당화 질서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규범적 개념은 **정의**(justice)이다. (2) 정의는 모든 형태의 정치 공동체를 지배하기 때문에(overarching), 어떤 구성원이 특정 권리나 재화를 갖는 이유나 갖지 않는 이유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에 선행하여 누가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 결정하거나 참여자들 상호 간의 지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이때 참여자들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정당화의 저자이자 수신자라는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우리가 정의 개념으로 초점을 좁히면 무엇보다도 정의의 의미가 자의성(arbitrariness)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점에 있음을 깨닫는다.<sup>1)</sup> 자의적 지배는 한 개인이나 공동체 일부(가령 계

---

1) John Rawls(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p. 5-6에 언급된 정의(definition)도 참고하라.

급)가 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권을 은폐·재생산하는 특정 구조나 마치 숙명처럼 다가오는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자의적 지배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지배이다. 그리고 부정의에 항거하는 투쟁은 얼마간 개인화되곤 하는 자의적 형태의 지배(domination)에 저항한다.<sup>2)</sup> 부정의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자극은 일차적으로 무언가를 새로이 혹은 더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는 억압과 핍박을 당하지 않으며 권리 주장과 **정당화에 대한 기본권(basic right to justification)**을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당화에 대한 기본권은 영향 받는 당사자에게 적정하게 정당화할 수 없는 사회정치적 지배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표현한다. 이와 같은 분개와 항의가 얼마나 구체적인 언어나 “두터운”(thick) 언어로 표현되든지 관계없이 그 핵심은 하나의 권리에서 출발한다. 그 권리란 “근거 없는”, 다시 말해 충분히 정당화되지 않은 권력이나 지배를 나타내는 법·구조·제도에 종속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 상호성, 대칭성, 평등, 균형 등의 용어로 서술하는 해방적 요구이다. 재귀적 관점에서 보면 정의를 요구하는 토대는 정당화 행위자(agent of justification), 곧 정당화를 요청하고 수행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 주장(claim)이다. 부정의의 희생자는 주로 특정한 재화가 없는 자가 아니라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할 때 “고려되지”(count) 않는 자이다.

아래에서 나는 정당화에 대한 권리라는 단일한 권리를 토대로 정치사회적 정의를 이해해야 한다는 논제와 그에 상응하는 사회의 기본구조를 지도하는 원리를 구성해야 한다는 논제를 논증한다. 나의 논증은 이러한 방법이 타인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라는 칸트적 정언 명령을 철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확신에 뿌리를 둔다. 처음에는 『정의의 맥락들』(*Contexts of Justice*)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논증대화이론(discourse theory)을 해석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의 규범이 제시하는 상호적·일반적 타당성 주장을 재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상이한 맥락에서 그러한 타당성 주장의 논증대화적·상호적·일반적 정당화 원리들로 귀결되는지를 보여주었다.<sup>3)</sup> 여기서 나는 그 작업을 이어가되, 정당화 의무 자체가 도덕철학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궁극적인” 규범적 문제를 형식화용론적 재구성(formal pragmatic reconstruction)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특히나 중요하다.

### 3

그러나 정당화에 대한 권리에 재구성적으로 접근하는 경로는 여럿이다. 이러한 접근은 역사적 관점이나 사회과학적 관점에 가깝다. 우리는 정치사회적 정의에 관한 가장 중요한 논증대화를 분석한 작업과, 각 논증대화를 이끌어낸 사회적 갈등을 조사한 작업을 결합하여, 이와 같은 갈등에서 정당화 물음이 제기된 맥락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즉 이제껏 제시·교정·거부·의문시된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모든 구체적 과정에서, 정당화에 대한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인간의 규범적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정의의 규범적 심층 문법을 표현한다. 정당화에 대한 권리를 재구성하는 데는 고금의(historical and contemporary) 정치를 성찰하는 관점만이 필요할 뿐, 동굴에서 이데아 세계로 향하는 플라톤 식 변증법적 상승은 불필요하다. 다시 말해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고 지지하고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당화 서사의 중심부에서는, 그 서사의 고유한 권리 주장 그리고 상호성·일반성 기준

2) 이와 관련하여 Ernst Bloch(1987), *Natural Right and Human Dignity*, trans. Dennis J. Schmidt, Cambridge, Mass: MIT Press, pp. 205-206은 여전히 읽을 가치가 있다.

3) 다음을 보라. Rainer Forst(2002), *Contexts of Justice: Political Philosophy Beyond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trans. John Farre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특히 pp. 39-40, 81-2와 ch. 4.2, 5.2를 볼 것.

에 의거하여 이 주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정의를 향한 탐색의 핵심 차원을 이룬다. 『갈등 속의 관용』(*Toleration in Conflict*)에서 나는 관용을 일면적으로 근거 짓는 것과 불관용을 비판하는 것이 관용의 재귀적 토대와 같은 정당화의 역학을 드러내는 정도를 역사적·체계적 방식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관용의 토대는 그 자체로 상호적·일반적 정당화 원리에 의존하며, 궁극적으로 우월한 것임이 판명된다. 나는 역사철학에 의존하는 과도하게 강한 논제에 의지하지 않으며 이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sup>4)</sup> 여기서서는 그와 같은 포괄적인 역사적 행로를 다시 따르지는 않겠다. 그럼에도 텍스트를 보면, 정당화에 대한 권리가 이성주의의 고안물(*contrivance*)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유효한(*historically operative*) 발상이었다는 확신은 명백하다. 이를테면 정당화에 대한 권리의 상호문화적 타당성 문제를 다룰 때가 그렇다. 나는 정의의 정치적 맥락에 자리매김해야 하는 정당화에 대한 도덕적 기본권을 핵심 발상으로 하여 출발하겠다. 그리고 당장 길을 험히 낼 수는 없어도 최소한 고전적·현대적 논쟁의 고르디우스의 매듭 몇 가지를 풀어낼 것이다. 이를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본다.

### 정의의 두 가지 그림

사회정의, 특히 분배정의의 사상은 (비트겐슈타인의 용어를 빌리면)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통적인 그림에 “사로잡혀”(captive) 있다.<sup>5)</sup> (4)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suum cuique)이라는 고대의 원리를 개인들이 재화의 정의로운 분배에서 어떤 몫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특수한 방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4

이에 따라 우리는 각인의 재화 공급량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추론하거나, 아니면 비교해서 따지지 않고 개인이 필수 재화를 “충분히” 갖고 있는지를 묻는다. 물론 이러한 분배·재화 중심 관점은 정당한데, 분배정의를 재화 할당을 포함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그림은 흔히 정의의 필수 차원을 생략하고는 한다. 예컨대 첫째, 어떻게 재화가 분배 대상으로 “세상에 나오는지”, 즉 생산의 문제와 생산의 정의로운 조직 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이보다 중요한 예로 둘째, 여하간 누가 생산·분배 구조를 결정하는가 하는 정치적 문제를 무시할 수 있다. 마치 올바르게 프로그래밍만 하면 되는 거대한 분배 기계(*giant distribution machine*)가 있다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까닭은 단지 더 이상 정의를 주체들이 성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 결과 주체가 수동적 수혜자로 전락해서만은 아니다. 그와 함께 셋째, 이러한 발상은 재화에 대한 정당화 가능한 권리 주장이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정당화 절차를 거쳐 논증대화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넷째, 재화에 집착하는 관점이 부정의의 문제를 차단할 우려도 있다. 이는 교정 대상을 재화가 부족한 상황으로 한정하는 한, 자연재해로 궁핍에 빠진 이들과 경제적 착취 혹은 정치적 착취로 인해 재화가 부족한 이들을 갈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두

4) Rainer Forst(2012), *Toleration in Conflict*, trans. Ciaran Cron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특히 sec. 18, 21, pp. 28-34를 보라.

5) Ludwig Wittgenstein(2001),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ans. G. E. M. Anscombe, Oxford: Blackwell, §115. “우리는 그림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언어 속에 놓여 있었고, 우리의 언어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저 무자비하게 반복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역주: 이영철 역(2006), 『철학적 탐구』, 서울: 책세상, pp. 97-98.) 나는 이를 다음 문헌에서 명료화한 적 있다. “Zwei Bilder der Gerechtigkeit”, in Rainer Forst, Martin Hartmann, Rahel Jaeggi, Martin Saar, eds(2009), *Sozialphilosophie und Kritik*, Frankfurt am Main: Suhrkamp.

상황 모두 똑같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 상황은 도덕적 연대성(moral solidarity)에서 나온 도움을, 다른 상황은 정의에서 나온 도움을 요하며, 후자는 착취·부정의의 조건과 이를 바꿀 수 있는 가용 수단에 따라 차별화된다. 이 차이를 무시해버리면 도덕의 변증법에 빠져 실은 정의가 요구하는 행위를 마치 관대한 원조에서 나온 행위로 치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율적 인간은 정의의 주체에서 정의의 객체로 바뀌며, 곧이어 원조의 객체나 자선의 객체로 전락한다.

이런 이유로 정확히 분배정의를 문제될 때는 정의의 **정치적** 요소를 직시하고 (확실히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재화의 양만 강조하는 그릇된 구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자의성에 근본적인 충격을 가하는 보다 적절한 두 번째 그림에 의하면, (부정의 분석을 항상 포함하는) 정의는 상호주관적 관계와 구조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재화의 주관적 공급 혹은 아마도 객관적 공급조차도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5)급진적 정의관은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즉 **정의의 제일 문제(the first question of justice)**를 검토함으로써 전개할 수 있다. 정의의 제일 문제는 사회적 관계의 정당화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맥락 내에서 “정당화 권력”(power of justification)의 분배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검토해야만 사회 부정의의 근원을 파헤칠 수 있다.

5

이 통찰력이 **비판적 정의론(critical theory of justice)**의 핵심이다. 비판적 정의론이 제일의 “선”으로 삼는 것은 정당화를 요구·제공·의문시하고 이를 정치적 행위와 제도 마련의 토대로 변환하는 사회적으로 유효한 권력이다. 그러나 이 “선”은 “전달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드시 논증대화적·집합적 방식으로 구성해야만 한다. 오직 **정당화 관계(relations of justification)**의 비판이론만이 이러한 구성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저해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sup>6)</sup>

###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정치사회적 정의의 논증대화이론을 지향하는 두 번째 정의의 그림을 따르기로 하면 어렵지 않게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즉 그러한 논증대화이론은 “순수한” 절차적 이론이므로 오로지 정의로운 관계를 확립하는 절차만을 정해주고 그 외 정의를 둘러싼 실질적 논쟁에는 개입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기껏해야 논증대화이론은 “중립적” 중재자 역할이고, 최악의 경우 고유의 입장이 없어서 전혀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점에서 오해이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개선하는 논증대화적 정의론은 “중립적” 토대가 아니라 정당화의 도덕원리, 곧 정당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도덕적 권리(the substantive individual moral right to justification)에 의지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탈형이상학 시대에서도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재구성해야 하는 **확고한 토대(fundamentum inconcussum)**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은 고전적 실천 이성 개념을 (변형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다. 그 외에 인간이 어떤 능력을 활용하여 정당화 원리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

6) 이에 관하여 특히 제4장, 제7장, 제8장, 제11장, 제12장을 보라. 그리고 Rainer Forst(2007), “First Things First: Redistribution, Recognition and Justific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6, No. 3과 낸시 프레이저의 응답으로 Nancy Fraser(2007), “Identity, Exclusion, and Critique: A Reply to Four Critic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6, No. 3을 보라. 또한 Rainer Forst(2007), “Raidical Justice: On Iris Marion Young’s Critique of the ‘Distributive Paradigm’”, *Constellations* 14를 볼 것.

겠는가? 다시 말해 그 외에 어떤 능력으로 특정 맥락에서 정당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 구성주의의 “궁극적” 토대는 그 자체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규범세계를 분석하면서 적절하게 재구성한 것으로 입증되어야 한다.<sup>7)</sup>

둘째, 이러한 “토대”에서 누구도 훌륭한 이유 없이는 타인에게 유보하지 못하는 권리로 실질적 인권 개념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은 적정절차를 밟은 구체적 해석 및 기본권으로의 법적-정치적 변형에 계속해서 의존한다. 그러나 상호성·일반성 기준의 도움을 얻은 정당화 원리 덕에 그러한 필수불가결한 권리에 관한 언설(statements)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이른바 **도덕적 구성주의(moral constructivism)**의 핵심이 된다.<sup>8)</sup>

(6) 셋째, 또한 (예상되는) 반론이 있는 경우에도, 순수한 합의론과 달리 상호적·일반적 정당화의 기준은 보다 나은 이유와 보다 못한 이유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 6

이 기준은 “합당하게 거부할”(reasonably rejected) 수 있는 권리 주장과 이유를 여과하는 여과망 역할을 수행한다. **상호성(reciprocity)**은 누구도 타인이 스스로 제기한 특정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내용의 상호성), 그리고 누구도 공유되지 않는 “상위의 진리”에 기대고 있다거나 타인이 자신과 똑같은 가치와 이해관심을 향유한다고 간단하게 가정할 수 없다는 점(이유적 상호성)을 뜻한다. **일반성(generality)**은 모든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타당한 근본 규범을 지지하는 이유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이 요건들이 기준으로서 갖는 강점은 내가 제안하는 이론의 실질적 함축에 있다.

이 이론의 더 나아간 넷째 측면은 “실질적”(또는 질료적) 이론과 “절차적”(또는 형식적) 이론의 구별이 일으키는 문제를 보여주면서도, 인권관과 **근본적 정의관** 양자를 도덕적 구성주의의 노선 위에 “건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이론은 내가 주장하는 **정당화의 기본구조(a basic structure of justification)**의 요소가 되는 원리들을 제공할 수 있다. 정당화의 기본구조는 **최대 정의(maximal justice)**, 즉 **완전히 정당화된 기본구조(a fully justified basic structure)**와 대비된다. 그래서 이 이론은 “질서정연한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는 대신, 한 사회가 정의의 요구에 부합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마땅한 최소 조건을 명시하는 원리를 제시해준다. 더 정확히는 어떠한 절차 **그리고** 정당화의 질료적 관계를 충족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준다.

도덕적 구성주의에서 도출한 원리와 권리는 (롤스의 개념을 좀 다르게 쓰면) 바로 **정치적 구성주의(political constructivism)**의 규범적 핵심을 이룬다.<sup>9)</sup> 정치적 구성주의는 (국내건 국제건) 정치 공동체의 기본적 사회구조를 집합적·논증대화적으로 “구성”하고 확립하는 작업이 이상적으로 말하면 구성원들 스스로의 자율적 성취 대상임을 뜻한다. 정치적 구성 역시 도덕적으로 유관한 원리가 문제될 때는 좁은 형태의 상호성·일반성 기준에 의지하므로 도덕적 구성주의는 정치적 구성주의의 일부이다. 이는 자연법론 모델의 방식이 아니다. 이 방식에서 참여자는 자신이 속한 정치적 맥락 내에서 기본적 정의를 논증대화적으로 정립하고 재구성하며,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해석한다. 정치적 구성주의는 정당화 기준과 정당화에 대한 권리를 충실히 지지함으로써 독보적인 정의관으로 자리매김한다. 본질적으로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다섯째 실질적 요점이 나온다. 즉 정당화에 대한 권리는 각 당사자에게 문제에 관하여 말

7) 이에 관해서는 특히 제1장을 보라.

8) 이 점과 아래 논의 사항에 관해서는 특히 제4~9장 및 제12장을 보라.

9) 이에 관해서는 John Rawls(1993),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제3장을 John Rawls(1980),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Journal of Philosophy* 77, No. 9와 비교하여 보라.

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상호적·일반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근본 규범, 제도나 구조에 대항하여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veto right)도 부여한다. 이 권리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취소 불가능하다.

(7) 따라서 도덕적 구성주의와 정치적 구성주의의 절차는 중첩되며, 어떠한 실질적인 규범적 함축도 한편으로 독립적 중요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언제나 본질적으로 논증대화적이다.

7

현실의 정당화 및 정책에 맞설 때 원용되는 모든 규범은 반드시 적절한 정당화 절차 내에서 상호적·일반적으로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구성주의 이론에 의하면 어떠한 외적 “기원”도 구성을 압도할 수 없다. 이 점은 다음 근거에서 명백하다. 정당화에 대한 권리는 정당화의 논증 대화를 요구하는 절차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 반론이나 논증 형식을 항상 가정할 수 있다. 정당화의 논증대화는 **보다 나은 논거의 강제 없는 강제**(the forceless force of the better argument) 더 정확히 말하면 **보다 나은 논거를 추동하는 강제**(force pushing toward the better argument)를 가한다. 논증대화적 정의론에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규범적 전제조건과 함축이 있으며, 어떤 것도 비논증대화적으로(nondiscursively) 승인될 수 없다. 이는 각각의 전제조건과 함축이 올바르게 구조화된 논증대화 내에서 정당화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논증대화적 정의론은] 전반적인 회귀적·재귀적 맥락을 설정함으로써 도덕철학과 민주주의론에서 등장하는 절차적 접근과 실질적 접근의 낡은 분업을 극복한다. 이 점은 이를테면 하버마스가 정당하게 주장하듯이 인권과 국민주권의 “동근원성”(co-originality)을 정당화 원리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는 한에서도 명백하고, (하버마스과 달리) 바로 이 **단일한 뿌리**[정당화 원리]에서 근원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에서도 명백하다.<sup>10)</sup>

위에서 살펴본 모든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증대화적 구성”이 이상적 내용을 함축하는 만큼, 언제나 상호주관적 **실천**으로 생각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자율적 인간은 독립적으로 도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상호주관적 실천을 통해 각 판단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동시에 자율적 인간은 판단을 정당화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미칠 모든 결과를 집합적으로 숙고해야 하며, 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정의의 제일 과제는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 자율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정의론

“자율적” 정의론이란 정당화 원리 외에 어떠한 토대도 요하지 않는 이론으로, 정의를 자율적 주체의 자율적 구성물로 간주하고 그리하여 정의 개념의 해방적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이론을 말한다. 더불어 자율적 정의론은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에 잘 들어맞아야 하면서도 윤리적 가치의 다원성과 다양한 사회적 영역 및 공동체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우선 여기서 정의는 자유, 평등 등 다른 가치와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 도대체 어떠한 자유와 평등 형식이 정당한지를 결정하는 데 원용하는 원리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8) 정의는 정당화 원리에 근거하며 정치적 맥락에서 최우선하는 제일 가치이다.<sup>11)</sup>

10) Jürgen Habermas(1996),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trans. William Rehg, Cambridge, Mass.: MIT Press. 또한 이 책의 제4장, 제5장, 제7장, 제9장을 보라.

11) 이 책의 제3~5장과 제8장을 보라.

둘째, 이러한 정의의 “일원론적” 성질 덕분에 필요와 응분 같은 정의의 구체적 측면이 지닌 다원주의와 다양한 분배 영역의 고유성에 길을 터준다. 분배 영역의 고유성이란 의료 서비스, 교육, 공직, 지위 등 특정한 재화는 사회적으로 상대적인 특성이 있는 특정 기준에 따라 분배된다는 것을 말한다.<sup>12)</sup> 정의 기준의 우선성과 근본적 정의 구조가 이러한 분배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여 최대 정의의 달성 과정에서 모든 재화를 동일 척도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떠한 재화도 자체적으로 분배될 수 없으며 [분배] 기준 적용의 우선순위를 두고 항상 갈등이 예견된다는 점에서 논증대화이론의 우선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논증대화이론은 이와 같은 모든 논쟁에 대하여, 정당화 과정의 당사자들 간 기본적 평등(a basic justificatory equality of those affected)을 실현할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셋째, 논증대화이론의 자율성이 보여주는 보다 중요한 측면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공리주의에 이르는 경쟁 이론과 달리 선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롤스 식으로<sup>13)</sup> “포괄적 신념체계”의 윤리적 다원주의를 숙고하고 나아가 정의 자체가 원리와 규범 속에 있다는 타당성 주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무론적 특성이 분명해진다. 그러한 원리와 규범은 상호적·일반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의 강제조치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의 탈을 쓰고자 하는 윤리적 논증은 반드시 상호성·일반성의 문턱(threshold of reciprocity and generality)을 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말하자면 다수의 특정한 가치 지향이 충분한 이유나 권위 없이 타인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다.<sup>14)</sup> 정의론은 선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불가지론을 취하기(agnostic) 때문에 윤리적으로 근거 지은 이론보다 선의 다원주의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다.<sup>15)</sup>

윤리에서 “자립적인”(free-standing) 정의론을 고안하려는 시도는 규범세계의 복잡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이론의 근본 물음을 포괄하는) 실천철학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정당화 실천이 합당한 인간 실천의 기본 형식인 한에서, 실천 이성 은 정의로운 정당화 관계를 기술하는 이론을 염원한다. 도덕이 법과 같은 여타 영역을 독점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정당화 관계 내의 참여자 관점은 근본적인 것으로 남는다. 정당화하는 존재로서 개인이 내리는 자기결정의 중심 지위는 이유를 요구할 때 표현되는 것으로서 정의론의 기획에 필수적이다.

### 정의의 한계

정의의 중요성을 사회정치질서 구조의 여타 “가치” 가운데 한 가치로 격하해서는 안 되듯이, 정의를 절대화하는 것도 똑같이 문제가 된다. 흔히 알려진 이 요점은 다양한 의미가 있다.

12) Michael Walzer(1984),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Basic.

13) Rawls, *Political Liberalism*.

14) 이에 관해서는 이 책의 제6장과 제7장을 보라.

15) 이에 관해서는 윌 김리카, 세일라 벤하비브, 마틴 젤과의 논쟁을 볼 것. Rainer Forst(1997), “Foundations of a Theory of Multicultural Justice”, *Constellations* 4와 그 응답인 Will Kymlicka(1997), “Do We Need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A Reply to Carens, Young, Parekh, and Forst”, *Constellations* 4. 그리고 Rainer Forst(1997), “Situations of the Self: Reflections on Seyla Benhabib’s Version of Critical Theory”,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23, No. 5와 그 응답인 Seyla Benhabib(1997), “On Reconciliation and Respect, Justice and the Good Life: Response to Herta Nagl-Docekal and Rainer Forst”,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23, No. 5. 또한 Forst, *Contexts of Justice*, pp. 228-229와 Martin Seel(1995), *Versuch über die Form des Glücks: Studien zur Ethik*, Frankfurt am Main: Suhrkamp를 볼 것.

먼저 정의가 충분히 자기비판적·재귀적이지 않은 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출현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필요와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사회제도나 개인의 태도에 무감각한(hardended)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현상 자체를 “정의의 부정의”(injustice of justice)로 비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정의를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다.<sup>16)</sup>

더불어 정의가 모든 규범세계를 포괄하지는 못하며 (상당 부분이기도 하다) 단지 특정한 규범적 맥락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개인과 사회는 정의가 아닌 미덕으로 구별된다. 통상적으로는 미덕 외에도, 때로는 정의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삶은 정의론이 그려낼 수 있는 것보다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를 이해해야만 정의의 우선성을 변호해야 하는 갈등 또한 이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철학자들은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탐구가 정의를 탐구하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는 사실도 성찰해왔다. 이는 포괄적인 진보와 행복의 상을 그려내는 정치적 유토피아의 전통이 증명한다. 그러나 정치적 유토피아에서도 정의는 중심 모티프(leitmotif)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회가 얼마나 바람직할 수 있는지, 그런 사회를 만들려는 시도가 얼마나 바람직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때, 정의는 이 시도를 비판하는 작업에도 조력함으로써 견고한 울타리를 형성한다.<sup>17)</sup>

이 모든 사항에서 정의관이 성공하려면 체계적 자기비판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재귀적으로 포괄해야 하고, 정의를 기술하는 언어(the language of justice)를 언제나 논증대화적 협상(discursive negotiation)에 회부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정의관은 “노골적인 부정의”로 고통 받는 이들이 정의 없이는 발언권을 갖지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이들의 권리 주장은 반드시 수신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의 현실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

16) Rainer Forst(2005), “Die Ungerechtigkeit der Gerechtigkeit: Normative Dialektik nach Ibsen, Cavell und Adorno”, in *Fiktionen der Gerechtigkeit: Literatur-Film-Philosophie-Recht*, eds. Susanne Kaul and Rüdiger Bittner, Baden-Baden: Nomos.

17) Rainer Forst(2006), “Utopie und Ironie: Zur Normativität der politischen Philosophie des ‘Nirgendwo’”, in *Kreativität*, eds. Günter Abel, Hamburg: 20. Deutscher Kongress für Philosophie.